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77
----------	------

2013년 7월 2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3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3년 6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3.7.2.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마곡사업추진단장 서노원)

가. 제안이유

- ‘마곡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수립’(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70호, 2012.10.11.)에 따라 마곡일반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에서 분할 신설된 지원시설용지의 입주자 선정 및 분양가격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마곡산업단지 입주자 선정 시 영리목적으로 사용될 용지는 경쟁 입찰 낙찰가로 선정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함(안 제8

조제1항).

- 산업시설용지 및 지원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름(안 제9조).
- 시장은 마곡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 외에 추가로 여성기업의 입주를 촉진할 수 있으며,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에 대해 신제품 개발, 신기술 도입, 경영지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제3호 및 제12조제4호).
- 시장은 마곡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별도로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20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협의사항 :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신설(강화)규제 없음
- 조직담당관(위원회) : 해당 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등) : 원안 동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 제외
- 여성가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제안 반영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 없음

라. 기 타 :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입법예고(2013.4.25~5.15) 결과 : 의견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별첨

4.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 이 개정조례안은 마곡지구내 신설된 지원시설용지의 입주자 선정 방법을 규정하고,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외부 전문가 자문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먼저, 안 제8조제1항과 안 제9조는 ‘마곡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수립’¹⁾시 신설된 지원시설용지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산업시설용지와 다른 입주자 선정 절차 및 분양가격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영리목적으로 사용될 지원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6항에 따라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산업시설용지와는 달리 경쟁입찰 낙찰가로 공급되도록 하고, 경쟁입찰 낙찰가로 입주자를 선정하기에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입주자 선정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조정하려는 것으로, 영리 목적의 지원시설용지 계획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 판단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6항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분양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분양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분양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용지(「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시설용지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경쟁입찰 낙찰가격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0호, 2012.10.11.

- 다음으로, 안 제10조제3호 및 안 제12조제4호는 마곡지구를 성평등도시로 조성하고자 여성기업 지원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령 및 여성발전기본법,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등 관계법규의 규정을 반영하여 여성기업²⁾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한 ‘여성기업인지원센터’ 등의 시설을 지정·설립토록 하고 여성기업·장애인기업의 신제품 개발, 신기술도입 및 경영지도 등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이해됨.³⁾

- 마지막으로, 안 제20조는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 및 자문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3년도 예산안 심의시 마곡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이 불가피하다면 자치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집행하도록 한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해됨.⁴⁾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여성기업’에 대한 정의는 여성이 실질적으로 소유·경영하는 기업으로서 ①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당해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인 경우에는 여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남성이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 ②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임.

3) 참고로 서울시는 ‘마곡지구 성평등 도시개발 모델구축’ 연구용역(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2.12)을 통해 마곡지구를 ‘여성을 배려한 도시시설 개선사업’을 넘어 성평등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성평등 지표 및 주요 추진항목을 제시한 바 있음.

4) 참고로 ‘마곡도시개발사업 정책자문회의’는 2012년도 총 16회, 2013년 현재(6월) 총 11회 개최되었으며, 그 주요 자문내용은 공원조성 관련 현안 검토, 산업·마케팅 분야 자문, 토지이용계획 분야 자문 등이었음. 2012년도에는 예산현액 2,597만원 중 2,239만원을 집행하였고 2013년에는 30% 증액된 3,381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집행유보 중에 있음.

- 종합하면, 본 개정조례안은 변경된 기본계획에 따른 신설 지원시설용지에 대한 공급방식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여성기업인 및 장애인기업을 위한 지원 기반을 명시하며, 마곡도시개발사업 정책자문 및 자문비용 지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의 요지 : 별첨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377
----------	------------

2013년 7월 2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 수정이유

- 지원 대상 기업을 명확히 하는 등 조문체계 정비와 일부 자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아 수정·보완하고자 함.

2. 수정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2조제11호, 안 제2조제12호)
- 지원 대상 기업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을 명시함. (안 제10조 및 같은 조 제4호)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0호를 제13호로 한다.

안 제2조제11호를 제10호 하고, 같은 조 제11호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여성기업”이라 함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2. “장애인기업”이라 함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안 제10조의 제목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중소·벤처기업 등 지원”으로 하며, 각호 외의 본문 중 “중소기업, 벤처기업 및 여성기업”을 “중소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안 제10조제4호 중 “중소기업, 벤처기업 및 여성기업”을 “중소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9. (생략)</p> <p>11. “외국인투자기업”이란 「<u>외국인투자촉진법</u>」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출자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 -----.</p> <p>1.~9. (현행과 같음)</p> <p><u>11.</u> “외국인투자기업”이란 「<u>외국인투자 촉진법</u>」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출자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2조(정의) ----- ----- -----.</p> <p>1.~9. (현행과 같음)</p> <p><u>10.</u> (수정안과 같음)</p> <p><u>11.</u> “여성기업”이라 함은 「<u>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p> <p><u>12.</u> “장애인기업”이라 함은 「<u>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u>」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p> <p><u>13.</u> (현행과 같음)</p>
<p>10. “사업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마곡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에스에이치 공사)를 말한다.</p>	<p><u>10.</u>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10조(중소·벤처기업 지원) 시장은 <u>중소기업과 벤처기업</u>의 입주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지정·설립할 수 있다.</p> <p>1.~2.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3. 그 밖에 <u>중소기업과 벤처기업</u>의 입주를 촉진하고 입주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p>	<p>제10조(중소·벤처기업 지원) ----- <u>중소기업, 벤처기업 및 여성기업</u> -----</p> <p>-----</p> <p>-----</p> <p>1.~2. (현행과 같음)</p> <p>3.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6조에 따른 여성의 취업, 창업 및 기업 활동 참여와 여성인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시설</p> <p>4. ----- <u>중소기업, 벤처기업 및 여성기업</u> -----</p> <p>-----</p> <p>-----</p> <p>-----</p> <p>-----</p> <p>-----</p> <p>-----</p>	<p>제10조(중소·벤처기업 등 지원) ----- <u>중소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u> -----</p> <p>-----</p> <p>-----</p> <p>1.~2. (현행과 같음)</p> <p>3. (수정안과 같음)</p> <p>4. ----- <u>중소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u> -----</p> <p>-----</p> <p>-----</p> <p>-----</p> <p>-----</p> <p>-----</p>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생명공학육성법」”을 “「생명공학 육성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을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하면서 같은 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여성기업”이라 함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2. “장애인기업”이라 함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용지는 경쟁입찰 낙찰가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분양가격) 마곡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및 지원시설용지의 분

양가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른다.

제10조의 제목“(중소·벤처기업 지원)”을“(중소·벤처기업 등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중소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면서 같은 호 중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중소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으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6조에 따른 여성의 취업, 창업 및 기업활동 참여와 여성인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시설

제11조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한다.

제1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의 신제품 개발, 신기술 도입 및 경영지도 등에 관한 사업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전문가 자문) ① 시장은 마곡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이와 관련된 마곡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정보통신산업(IT)”이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 3. “바이오산업(BT)”이란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에 따른 생명공학기술을 바탕으로 생물체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여 인류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진단·치료에 필요한 유용물질과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4. “녹색산업(GT)”이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경제, 금융, 건설, 교통물류, 농림수산, 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5. “나노산업(NT)”이란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나노기술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 제조, 생산,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6.~9. (생략) 11.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 3. ----- 「생명공학육성법」----- ----- ----- ----- -----. 4.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 ----- ----- ----- ----- -----. 5.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 ----- ----- -----. 6.~9. (현행과 같음) 10. ----- 「외국인투자 촉진법」 -----

현행	개정안
<p>제10조(중소·벤처기업 지원) 시장은 <u>중소기업과 벤처기업</u>의 입주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지정·설립할 수 있다.</p> <p>1.~2.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3. 그 밖에 <u>중소기업과 벤처기업</u>의 입주를 촉진하고 입주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p>	<p>제10조(중소·벤처기업 등 지원) --- <u>중소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u>-----</p> <p>-----</p> <p>1.~2. (현행과 같음)</p> <p>3.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6조에 따른 <u>여성의 취업, 창업 및 기업활동 참여와 여성인력개발 활성화</u>를 위한 시설</p> <p>4. ----- <u>중소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u>-----</p> <p>-----</p>
<p>제11조(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시장은 마곡산업단지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주촉진을 위하여 「<u>외국인투자촉진법</u>」 제18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지원조례」 제1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p>	<p>제11조(외국인투자기업 지원) -----</p> <p>----- 「<u>외국인투자 촉진법</u>」</p> <p>-----</p> <p>-----</p> <p>-----</p>
<p>제12조(그 밖의 지원사업) 시장은 마곡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3.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4. 그 밖의 마곡산업단지 입주자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제12조(그 밖의 지원사업) -----</p> <p>-----</p> <p>-----</p> <p>1.~3. (현행과 같음)</p> <p>4. <u>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의 신제품 개발, 신기술 도입 및 경영지도 등에 관한 사업</u></p> <p>5. -----</p> <p>-----</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20조(전문가 자문) ① 시장은 마곡 산업단지 활성화 및 이와 관련된 마곡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20조, 전문가 자문 수당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제1호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마곡 도시개발사업 정책자문회의는 2012년부터 운영되어온 사업으로 조례 개정 이전에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음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4항에 따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제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에 의해 나머지 비용인 전문가 자문 수당을 추계한다고 해도 2천만원이 넘지 않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 되므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제1호에 의해 비용추계서를 생략할 수 있음

4. 작성자 : 마곡사업추진단 마곡사업담당관 김혜진 (2133-1514)